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백영기[6574]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03706호

시행일자 2026. 6. 24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관련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 가. 대통령령 제36116호(2026. 2. 19.)(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근거 마련)
 나. 대의협 제821-12957호(2026. 3. 3.)
 다. 대의협 제821-03574호(2026. 6. 19.)

3.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할 예정이며, 현재 관련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중(의견조회 마감일 6/24)으로 행정예고 이후 고시 발령이 예상됩니다.

4.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실시 전 환자의 연간 도수치료 실시횟수 등을 조회·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, 회원 여러분께서 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&A를 송부하오니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6.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관련 고시가 최종 개정·시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며, 제도 운영에 따른 회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 등 지속 노력하겠습니다

#붙임

1)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개발 관련 자료 일체 각 1부.

2)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.

3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